

충청북도조례·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1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9년 12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충청북도조례·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조문중 해석상의 혼란과 현실에 불합리한 관련조문을 정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규칙공포시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일 경우 그 뜻을 전문에 기재토록한 단서 조문의 삭제(안 제4조 단서)
- 조례·규칙 등의 공포방법 재조정(안 제7조)
 - 조례·규칙 → 도보 게재
 - 도의회의장 → 도보 및 일간신문 게재, 게시판 게시
 - 예산의고시 → 도보 및 일간신문 게재, 게시판 게시
- 현실에 불합리한 조문 정비

3. 근거법령 : 별첨

- ※ 첨 부 : 1. 개정조례안
2. 신구조문대비표
3. 기타참고자료

충청북도조례·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·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중 단서를 삭제한다.

제5조중 “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”를 “예산 및 예산외의 도의”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7조(공포방법) ①조례 및 규칙의 공포는 도보에의 게재로써 한다.
다만,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도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.
- ②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
제1조 내지 제3조(생략)	제1조 내지 제3조(현행과 같음)
제4조(규칙)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, 도지사가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. <u>다만, 그 규칙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.</u>	제4조(규칙)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, 도지사가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한다. (삭제)
제5조(예산등)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---- 적는다.	제5조(예산등) 예산 및 예산의 도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---- 적는다.
제7조(공포방법) 조례·규칙등은 도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.	제7조(공포방법) ① 조례·규칙의 공포는 도보에의 게재로써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법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도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. ②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관련법규 발취

□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14조(운영규정)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조례
와 규칙의 공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
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